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 Home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택전시관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아크로 여의도 더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acro.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은 아크로 여의도 더원 홈페이지(<https://www.acro.co.kr>)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정하여 주택전시관 방문 가능 기간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전 및 주택전시관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작성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방문기록부 운영예정)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을 경우(발열과 기침 및 목 아픔 등 호흡기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유증상자) 기타 주택전시관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입장이 불가합니다.
- ※ 공급계약으로 인한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및 수분양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 가능 기간,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10.26)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10.20.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10.20. 광고일과 다름)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청약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본 건축물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수분양자는 본 분양목적물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비 주식회사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도 포함)

###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2년 10월 31일(월요일)	2022년 11월 3일(목요일) 16:00 이후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1월 6일(일요일)(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주택전시관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GF층)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APT무순위 / 잔여호실 / 취소후재공급	○	○	X	X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 1533-2521)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과-34841-분양신고-제6호(2022. 10. 20.)로 분양신고를 한 건축물임
- 본 건축물은 서울시 영등포구 건축과에서 2021-건축과-신축허가-23 (2021. 03 .11.)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당 사업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5,541㎡ [업무시설(오피스텔) 지분 : 5,040.0936㎡]
  - 건축물 연면적 : 85,189.2017㎡ [업무시설(오피스텔) : 77,482.8074㎡]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 7층 ~ 지하 2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 1층(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상 1층 ~ 지상 2층(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오피스), 지상 4층 ~ 지상 29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7층 ~ 지상 29층, 1개동, 오피스텔 총 492실
  - 주차대수 : 575대 (자주식 371대, 기계식 204대) / 오피스텔 550대, 근린생활시설 12대, 오피스 13대
  - 본 분양광고에 따른 공급대상물(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며 동일 건축물 내 별도 시설인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 예정입니다.
-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시공사 : 디엘이앤씨주
- 대리사무신탁사 : 한국자산신탁주
- 내진설계 등급 :
  - 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 나. 「건축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 VII - 0.170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 지진하중 적용계수

지역계수 (Z) / 위험도계수	유효지반가속도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 (Ie)	반응수정계수 (R)	기본진동주기 (T)	내진설계범주
0.11g/2.0	0.176g	S4 (지하구조의 영향을 고려한 지반증폭계수 적용)	1.2	4.0	Tx: 1.8755 Ty: 2.3574	C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VII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170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군	타 입	공급호실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호실수	합계	비고
1군	49A	114	38	154	192	※분양신고일(2022.10.20. 광고일과 다음)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법인
	49B	78				
2군	59	144	28	116	144	
3군	99	52	10	42	52	
4군	119A	26	20	84	104	
	119B	52				
	119C	26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오피스텔)

(단위 : 실, ㎡)

군	타 입	공급호실 (실)	공급면적(㎡)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기타(㎡)	주차장(㎡)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49A	114	49.1185	23.6558	72.7743	4.1072	2.1233	27.6174	106.6222	6.9169
	49B	78	49.9994	24.1189	74.1183	4.1809	2.1613	28.1127	108.5732	7.0410
2군	59	144	59.9964	28.8367	88.8331	5.0170	2.5940	33.7337	130.1778	8.4489
3군	99	52	99.7376	47.3424	147.0800	8.3403	4.3120	56.0786	215.8109	14.0452
4군	119A	26	119.6327	56.3293	175.9620	10.0037	5.1719	67.2651	258.4027	16.8469
	119B	52	119.9037	55.5404	175.4441	10.0266	5.1835	67.4175	258.0717	16.8851
	119C	26	119.9905	57.0607	177.0512	10.0337	5.1873	67.4662	259.7384	16.897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오피스텔)

(단위 : 실, 천원)

군	타 입	금액	공급 호실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일	
										23.04.17	23.11.15	24.06.17	25.01.15	25.08.18	26.03.16		
1군	49A	최고가	114	4~29층	1,113,643	504,870	50,487	1,669,000	166,900	166,900	166,900	166,900	166,900	166,900	166,900	500,700	
		최저가		4~29층	977,524	443,160	44,316	1,465,000	146,500	146,500	146,500	146,500	146,500	146,500	146,500	439,500	
	49B	최고가	78	4~29층	1,145,001	519,090	51,909	1,716,000	171,600	171,600	171,600	171,600	171,600	171,600	171,600	514,800	
		최저가		4~29층	979,523	444,070	44,407	1,468,000	146,800	146,800	146,800	146,800	146,800	146,800	146,800	440,400	
2군	59	최고가	144	4~29층	1,349,174	611,660	61,166	2,022,000	202,200	202,200	202,200	202,200	202,200	202,200	202,200	606,600	
		최저가		4~29층	1,184,366	536,940	53,694	1,775,000	177,500	177,500	177,500	177,500	177,500	177,500	177,500	532,500	
3군	99	최고가	52	4~29층	2,218,609	1,005,810	100,581	3,325,000	332,500	332,500	332,500	332,500	332,500	332,500	332,500	997,500	
		최저가		4~29층	2,025,771	918,390	91,839	3,036,000	303,600	303,600	303,600	303,600	303,600	303,600	303,600	910,800	
4군	119A	최고가	26	4~29층	2,672,998	1,211,820	121,182	4,006,0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400,600	1,201,800	
		최저가		4~29층	2,493,516	1,130,440	113,044	3,737,000	373,700	373,700	373,700	373,700	373,700	373,700	373,700	1,121,100	
	119B	최고가	52	4~29층	2,667,001	1,209,090	120,909	3,997,000	399,700	399,700	399,700	399,700	399,700	399,700	399,700	1,199,100	
		최저가		4~29층	2,474,163	1,121,670	112,167	3,708,0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370,800	1,112,400	
	119C	최고가	26	4~29층	2,655,655	1,203,950	120,395	3,980,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398,000	1,194,000
		최저가		4~29층	2,502,852	1,134,680	113,468	3,751,000	375,100	375,100	375,100	375,100	375,100	375,100	375,100	375,100	1,125,300

※ 상기 공급금액은 호실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인지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해당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시 수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소인 처리 하여야 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분양목적물(오피스텔)이 속한 건축물은 3개의 용도별 시설(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건축물입니다.
- 상기 오피스텔은 492실 (7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 공급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 취득등록세), 인지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전체 용도(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가 통합 사용하는 부분(지하 7층 우수조/중수조/기계실/연료전지실/복도 및 우수조/중수조 관리층(진입계단 포함), 지하 4층~지하 6층 제연헬륨, 지하 3층 배수펌프실, 지하 2층 용역원실, 지하 1층 공조실/종합방재실/ MDF실, 지상 1층 복도/공중화장실/종합방재실(지하 1층) 출입계단, 지상 2~3층 휴게실/샤워실 등)은 전체 공용면적으로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통합 사용되는 부분은 지하 7층 펌프실/정화조 및 펌프실/정화조 관리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진입홀, 지하 7층~지상 3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및 전실, 지하 6층 발전기실, 지하 5층 전기실/소화약제실, 지하 2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홀/생활폐기물보관/관리실/택배보관소, 지하 1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진입홀, 지상 1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홀/복도/아트리움 연결계단 등은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으로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경사로(지상 1층~지하 2층)는 전체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가 공동으로 사용해야하며, 각 용도별 면적배분은 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및 배분되었습니다.
- 지상 3층에 위치한 공공기여시설은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로 전체 오피스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여시설은 관할 지자체에서 추후 프로그램 및 시설 용도 등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2층 주차장은 전체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며, 면적은 각 시설별 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및 배분되었습니다. 지하3층~지하6층 주차장과 지하7층 기계식주차장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전체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간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시설비율로 대지지분을 배분하고, 각 용도의 호실별 대지지분은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단,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호실에 인접한 공용부분의 형태, 층별 공간구성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 시설물(자전거보관소, 생활폐기물보관소, 택배보관소, 옥상정원, 주민공동시설,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위치/용량/속도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주택전시관 내 비치된 허가도서 등을 통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총 11대(지하 6층~지상 29층까지 9대, 지하 7층~옥탑층까지 운영되는 비상용 엘리베이터 2대)가 운영되며, 오피스텔 일반 엘리베이터 중 1대(남동측)는 지하1층, 지상2, 3층에서 정차하지 않습니다.
-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은 지하2층~지상3층까지 운영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됩니다. (단, 지하1층은 오피스텔 입주인 전용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있으므로 정차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사업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자 '원트웍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법률의 변경, 금융시장의 변화,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수분양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분양사업자 및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해당 지자체에 인근 개발계획 문의 또는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추후 정부정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그리고 해당 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청약자 및 수분양자의 미숙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과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의 청약 및 계약일정과 중도금 납부일정, 준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공급조건은 공급시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본 분양광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입주지정기일 이후 수분양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II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10.20.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서울특별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분양 신청자의 수가 우선분양 호실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우선분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2.10.2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정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동·호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며,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층·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2년 10월 31일(월요일)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2년 11월 3일(목요일) 16:00 이후	2022년 11월 4일(금요일)~ 11월 6일(일요일) (10:00~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60 GF층)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지정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li> </ul>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li> <li>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li> </ol> </li> <li>※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li> </ul>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1군 (49A, 49B)	5,000,000원 (금 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li> <li>•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li> </ul>
2군 (59)	5,000,000원 (금 5백만원)	
3군 (99)	5,000,000원 (금 5백만원)	
4군 (119A, 119B, 119C)	5,000,000원 (금 5백만원)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신한은행 전 지점)

구 분	구비사항			
일반 영리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정 창구에 비치)</li> <li>• 청약신청금</li> <li>•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청약신청자 명의)</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금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금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법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서(신한은행 지정 창구에 비치)</li> <li>•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li> <li>• 사업자등록증 1부</li> <li>•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 포함) 등)</li> <li>※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li> </ul>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준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주택전시관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10.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

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책임지지 않음.)

##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층·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2년 11월 3일(목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층·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층·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당첨자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li> <li>•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li> </ul>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Ⅲ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 계약기간 및 장소

- ※ 거주자 우선분양(서울특별시 거주자) 청약자는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있는 별도의 신청서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 지참 후 주택전시관으로 내방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2년 11월 4일(금요일) ~ 2022년 11월 6일(일요일)	10:00~16:00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GF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일정

-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오피스텔 계약일정을 홈페이지(<https://www.acro.co.kr>)에 게시하여 사전 방문 예약을 받을 예정이오니 예약가능한 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하신 시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예약 가능 일정은 당첨자 별도안내 예정]

##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계좌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454079-6	한국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수분양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01홍길동)
중도금 및 잔금	대구은행	가상계좌번호	한국자산신탁(주)	

-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및 분양관리신탁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입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계좌가 아닌 수분양자별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계약금 납부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일은 익일 은행영업일로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총·호수를 필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 사항
본인 계약 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2. 수분양자 인감도장 및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재외 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1부 4. 인지세납부수입인지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전자수입인지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법인 계약 시	1.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4. 법인 등기부등본 1통 5.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1통) 6.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도장, 신분증 지참 7. 수입인지(인지세)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제3자 대리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 외에 아래의 서류추가제출 1. 수분양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2. 수분양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주택전시관에 양식 비치) 3.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신고일(2022.10.2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 인근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해 층·호실별 위치 및 배치 구조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 및 시공사에게 서면(주민등록표 등·초본 포함)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 및 각종 홍보물 및 영상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

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 및 영상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분양광고일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수분양자는 충분히 인지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주관사항으로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비 주식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명칭, 조경세부 식재 계획 및 외부색채 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관계 현황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본 건축물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비 주식회사 및 수분양자는 본 분양목적물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의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수분양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의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본 분양광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1항 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공급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공급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의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함. 부동산등기(최초 공급계약서와 최종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사업으로 본 건축물의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10%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 또는 최초 지정한 대출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 알선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수분양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관계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분양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수분양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수분양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수분양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주택전시관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분양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 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사유로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해약할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혜택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시행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해당 시행자에 변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수분양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개 호실 이상 다호실수분양자(오피스텔,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후 담보대출 전환시 DSR 적용에 따라 개인별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상선택옵션 - 오피스텔

타입	무상선택 옵션			비고
	구분	기본형	선택형	
공통 (49A,B,59,99 119A,B,C)	거실, 주방, 복도	원목마루	타일	
59	거실 ~ 침실2 간 경계벽	벽체 및 도어 설치 (벽체마감 : 거실벽 타일, 침실2벽 도배)	선택1: 유리 슬라이딩도어 설치(4 DOOR)	-
			선택2: 거실 확장형 (벽체 및 도어 미설치)	
119A	침실4	유리파티션 및 유리 슬라이딩도어 설치	선택1: 거실 확장형(유리파티션 및 유리슬라이딩도어 미설치)	
			선택2: 침실3 확장형(유리파티션 및 유리슬라이딩도어 미설치 / 불박이장 포함)	
119A,B,C	다용도실	세탁기/건조기 설치공간 병렬구성 (인조대리석 상판+상부장(옷걸이봉))	세탁기/건조기 설치공간 직렬구성 (상부장+키큰장)	

-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선택사항에 따라 거실/침실/다용도실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리슬라이딩 도어 설치 시 상·하부에 레일이 설치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9A 선택2 (침실3 확장형)의 불박이장 설치 시 창호와 일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미 선택 시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 ■ 인지세 안내

- 본 오피스텔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시점에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의 부동산정책변경,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의 사유로 향후 본 오피스텔의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부동산 전매 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전매계약 진행 시 양수인과 양도인은 별도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본 규정은 부동산 전매 시 인지세의 부담주체를 안내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경우에도 본 오피스텔의 전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본 오피스텔은 현재 전매제한 물건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을 말함)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합니다.)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 2026년 11월 예정
- 입주 예정일 : 2026년 12월 예정
-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 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또는 법원명령 발동, 주요감염성 질병(코로나19 등)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준공 및 입주예정일이 지연될 경우,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규정을 사업주체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 시 수분양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 사항

- 본 공급시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 시공사 디엘이앤씨(주) 간에 체결한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시행 및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1.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대리사무신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한국자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분양계약서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분양사업자인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3. 한국자산신탁(주)이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은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인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 있습니다.
4.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근거하여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은 분양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 등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5.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한국자산신탁(주)에서 관리하며,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거 분양수입금 총액을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양도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7. 한국자산신탁(주)은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책임이 없습니다.
8.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인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9. 본 사업 관련 일체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부담하며,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1. 한국자산신탁(주)은 중도금 대출금 앞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VI

**기타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일반사항

- 본 분양 목적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 당시의 제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입별, 호실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강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관계법령에서 정한 2%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과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설계 변경 및 사업부지 인접도로의 도로계획, 인접부지와의 경계측량 등에 따라 증강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일부 호실은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샘플하우스는 수분양자(입주예정자)의 관람용이 아닌 시공상의 품질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227호, 2021.11.12)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내 오피스텔과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본 단지는 복합건축물로 시설(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간 차량출입구와 지하2층 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복합건축물로 단지 내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분양(또는 임대)되는 시설로서 특정시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다른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계획, 운영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에 의거 주택전시관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주택전시관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주택전시관 내에 비치된 허가도서 등을 통

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입주자 전용 공동시설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공용 실외기 설치공간, 구내통신실 등 공용부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이후 주소 및 계약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 서면으로 변동 사실(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집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명기)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 신청 및 수분양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같으며 청약 신청 및 수분양자의 주소 변경 통지서가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 도달했는지의 입증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층·호수는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 대리사무신탁사, 시공사 날인이 없는 분양 계약서는 무효이며, 분양 계약서가 발행되었다더라도 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본 분양 계약은 무효로 하고, 미리 교부된 분양 계약서는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 또는 시설이므로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관련 시설물의 위치, 설계변경, 대지지분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수분양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수분양자가 납입한 분양 대금은 시공사의 공사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로 지출되며, 수분양자의 중도 해지에 의한 환불금 반환 의무 및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 의무는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대출이자(연체이자 및 대출관련 수수료 등 제반 비용 포함) 등을 공제합니다.

## ■ 민원

-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 안내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이를 기초로 한 분양(공급)계약 조건의 변경 또는 해제(지)요구, 사업관계자 또는 제3자(행정기관 포함)에 대한 민원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타 분양 목적물의 마감사양, 주민공동시설(지하 1층 오피스텔 전용)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사양 및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인테리어, 모형에 표현된 입면디자인, 외벽 색채 및 마감재, 사인,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공동시설(지하 1층 오피스텔 전용)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을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배치 관련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권한이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사회재난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수분양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부분,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수분양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지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등 주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또는 증축, 오피스텔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외벽마감, 보행자출입구, 주차장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실제 시공시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정화조,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주민공동시설 및 실외기실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환경(전신주위치, 가로수, 지상개폐기(한전패드), 가스정압기 등), 개발계획, 교통여건(고가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호실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관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흠집, 결, 무늬, 이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오피스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입점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내·외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체 용도(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가 통합 사용하는 부분(지하 7층 우수조/중수조/기계실/연료전기실/복도 및 우수조/중수조 관리층(진입계단 포함), 지하 4층~지하 6층 제연헬륨, 지하 3층 배수펌프실, 지하 2층 주차장/주차램프/용역원실, 지하 1층 주차장/주차램프/공조실/종합방재실/MDF실, 지상 1층 복도/공중화장실/종합방재실(지하 1층) 출입계단, 지상 2~3층 휴게실/사위실 등)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등 유지, 보수, 관리는 입점자(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합니다.
-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통합 사용되는 부분은 지하 7층 펌프실/정화조 및 펌프실/정화조 관리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진입홀, 지하 7층~지상 3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및 전실, 지하 6층 발전기실, 지하 5층 전기실/소화약제실, 지하 2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홀/계단실 및 전실/생활폐기물보관소/관리실/택배보관소, 지하1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계단실 전실, 지상1층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 엘리베이터 홀/복도/아트리움 연결계단 등에 대한 상하수도, 전기 등 유지, 보수, 관리는 입점자(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합니다.
-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연결하는 외부 에스컬레이터는 근린생활시설 전용부분으로 유지, 보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비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호실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호실 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오피스텔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각 분양 호실별 조망권, 일조권 등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분양목적물의 배치구조 및 호실별 위치, 시설물계획(한전패드, DA 등)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 특성상 저층호실 및 차량출입구와 인접하여 배치된 일부호실은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사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호실 내 우물 천정의 깊이 및 폭,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연도, 정화조, DA, 헬륨, 등에 인접한 호실에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노대 등 공용부는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 출입구 및 코어(엘리베이터홀, 계단실)와 인접 호실은 보행자의 통행 및 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옥상정원 등 공용부 외부공간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각종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는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옥탑층의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 난간으로 설치됩니다.

## ■ 주택전시관/광고

- 수분양자는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대표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식 광고홍보물 여부는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물 등), 호실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59타입, 99타입, 119A타입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49A타입, 49B타입, 119B타입, 119C타입은 분양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주택전시관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전시관에 설치 된 모형은 대지 주변현황, 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호실의 샘플하우스는 필요한 설비 기기, 현관출입문 및 화장실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컴퓨터그래픽(CG) 등에 표현된 외벽 디자인 및 입면의 줄눈형태, 입면 마감재의 입면 돌출, 표현, 재료 색채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 호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퓨저,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호실 내 통신 단자함, 전기분전반 등의 설치위치는 각 호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호실,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등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월패드 등의 제품사양, 형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와 형태, 재질, 색채, 사양(유리 및 틀), 열림(개폐)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 취향 등을 사유로 각 호실별로 위치변경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수분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전시관 천장, 벽 등에 설치된 DP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기,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홈네트워크 기기류, 에어컨 등을 포함한 가전제품에 대하여 본 공사 시 위치 및 규격, 용량,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재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을 포함)
- 주택전시관,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관련

- 지상 1층에는 차량진출입구 및 비상차량 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차량의 소음 및 진동, 야간 차량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옥탑 층에는 제연철편, 태양광패널, 실외기, 옥상정원 등이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호실은 소음, 진동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1개동으로 구성되어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 코어의 진입부 위치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3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어의 출입구 위치와 형태는 주택전시관 내 카달로그 및 모형 등으로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의 위치에 따라 코어와의 거리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에 인접하여 여의나루로(도로) 및 국제금융로2길(도로)이 조성되어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불빛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건물(업무·상업시설 등)로부터 시각적 간섭,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문닫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조망 및 방향, 일조량,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PIT, 환풍, 급배기구 및 생활폐기물보관소로 인해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유시설 및 대지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의 입주자 및 입점자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으며, 개별호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지 1층에 위치한 공개공지는 공공에게 개방되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통행에 제한 또는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가 임의로 쉼스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으며 조경 식재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은 현장의 실제 여건상 규모,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설계변경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외부의 도로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호실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 및 각 코어 출입구,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은 특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 등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형지물 및 대지의 경사도에 의해 실내외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 지하층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 외관(지붕, 옥탑, 입면, 출입구, 창호보형,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등), 단지의 명칭 등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호실 내에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모두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 지상 3층에 위치한 공공기여시설(업무시설-오피스)은 영등포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향후 세부 용도가 결정될 예정이며 구조적으로 오피스텔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공기여 시설(업무시설-오피스)은 공공에게 개방되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입주자(입점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목적물은 복합용도로서 단지 내 상호 시설간의 소음, 민원, 냄새, 출입동선의 간섭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각 용도별 입주자(입점자)의 일방적 제한조치가 불가하며 상호간 협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에 건물명칭 및 상가간판,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최하층(지상 4층) 및 최상층(지상 29층) 모든 호실에는 방범을 위하여 창호마다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 도로 및 보행로의 선형과 바닥 패턴, 포장재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공개공지,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담장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 지하층 환기를 위한 DA(dry area) 그릴창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냄새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며 이삿짐은 지상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차량 통행의 높이제한은 2.7m로 대형 화물차량 및

이상징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b>지하주차장</b>	지하 1층 ~ 지하 2층	지하 3층 ~ 지하 6층 (지하 7층 기계식 주차장)
<b>사용자</b>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오피스텔	오피스텔

- 차량 통로의 유효높이 외 주차 구간의 일부는 설비 및 구조를 위해 유효높이 2.1m 이상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총 주차대수는 575대(오피스텔 550대 / 오피스 13대 / 근린생활시설 12대)로 지하 자주식, 기계식 주차장(자주식 371대 / 기계식 204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텔 영역(지하 2층 일부분~지하 7층)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영역(지하 2층 일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하 2층 주차장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 이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로써 차단기를 통해 시설별 주차구획으로 영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각 시설별 이용자는 코어의 이용을 위해 상호 주차 영역을 통행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3층 ~ 지하 6층(지하 7층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은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입주자(입점자)는 사용이 불가하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6층에는 오피스텔 전용 주차공간 및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7층에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7층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 가능한 차량 제원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차량 입출고 지연 등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경사로에 인접 호실은 차량 출입으로 인해 소음, 야간 불빛 등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정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용료 납부는 입주자(입점자)가 관리비로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의 교통계획은 영등포구청 및 서울특별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목적물의 설계 및 구조에 따라 조성되는 테라스 등 공용부 외부공간에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2층의 오피스텔 각 코어와 쓰레기 처리공간, 택배보관소 간의 동선 및 거리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남동측 필로티 하부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위치와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활동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 확보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구 경사로에 경고등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실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우수조는 공용부 조경용수 용도로 사용 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고, 미술장식품 설치 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진입램프 후면에 한전패드 및 가스정압기가 설치되고 추후 한국전력공사 및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현장조사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사항으로 입주자의 요구에 의해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기일 이후 수분양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 단위호실 관련

- 무상 선택 옵션 내용은 타입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전시관, CG, 모형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 입면에 설치된 구조물 및 경관조명으로 인해 일부 호실에 시야간섭, 눈부심, 현휘 등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각 호실 간 골조(경계벽 및 바닥구조, 기둥, 보)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층간 또는 호실 간 벽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옥탑층의 옥상조경 관리 및 각종 설비 장비의 운영으로 인해 인접한 호실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단위호실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단위호실 타입에 따라 세라믹타일 또는 인조대리석 등을 사용하며,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보일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가전제품 중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김치냉장고, 인덕션, 빌트인 전기오븐,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타입별 가전제품의 종류 및 품목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자재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마루 등 바닥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 실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온수 바닥 난방이고 냉방은 천정형 에어컨(무상제공)이며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에어컨과는 모양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도어 후면 벽체 부분이나 노출된 침실 내부벽체 등에 설치되며 실제 시공 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고품질의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의 환경 조건 및 사용자의 이용 방식에 따라 일부 호실에서 창호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내측에 설치된 다용도실 등에는 내부 온·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호실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
-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측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기준층 (지상4층~지상29층) 천장고는 2.45m(실기준)로 시공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타입별로 천장에 설치되는 천장의 구조(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크기, 높이 등)가 다르며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구조, 크기 등이 변경(축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조망 및 방향, 일조량,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 외부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난간, 방충망의 제조사, 크기, 형태, 재질, 사양, 접합방식, 디자인, 색상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단위호실의 미서기창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철제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방창호 : 유리 또는 철제난간 설치)
- 오피스텔 단위호실 중 일부는 배연창 및 소방관 진입창이 계획되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상부벽체에는 피난유도표지판이 관련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내부 벽체 중 일부는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지상4~7층 49B 타입 측벽에 설비배관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구조 및 위치에 따라 주방창호 및 침실1 내 창호의 설치 유무(119B 타입)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창호가 공용복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구조의 단위호실은 상호간 시각적 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호실은 주방창호 전면에 위치한 공용복도 및 노대를 통행하는 타입주민에 의해 시각적 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 설치공간, 옥상정원 및 연결통로와 인접한 호실은 타입주민 및 실외기 등으로 인해 시각적 간섭,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배연창과 인접한 호실은 시각적 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구조에 따라 오피스텔 지상4층, 8층의 일부호실 전면에 외부공간(테라스 등)이 조성되며, 사생활침해, 보안상 이유로 인공펜스, 트렐리스 등이 설치될 예정이나 이는 건축법상 공용공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테라스 등)은 입주자 전용으로 테라스 사용 시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합니다.
- 외부공간(테라스 등)은 건물 구조상 공용부에서 접근이 곤란한 경우 진입이 가능한 호실에서 유지, 관리해야하며, 공간의 점검 필요시 해당 입주자의 전용공간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각 호실 천장 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은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용부의 평면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소방법에 의거하여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며 해당 창호는 관련법령의 창호사양이 적용되고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가 부착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디자인상 외부 돌출장식물은 호실마다 돌출길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음영이 생기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내 외부 창호사양(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제품사양, 크기사양, 개폐방향, 하드웨어, 방충망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내풍압을 고려하여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최하층(지상4층) 및 최상층(지상29층), 지상 8층 일부 호실은 외기와 직간접으로 면하여 기준층 호실과 난방효율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장비(실외기, 탈취기, 제연팬)에는 방음,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 하였으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층의 오피스텔의 각 호실 출입문은 방화스틸도어가 설치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호실 마감자재(수전이나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 및 전열교환기, 에어컨 실내기, 환기구, 욕실팬, 온수분배기, 자동식소화기, 각종 배수구의 위치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2~4층에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및 일부 오피스텔 호실용 실외기가 설치되므로 실외기실과 인접한 호실은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배수관 설치 등으로 호실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타일의 패턴 및 나누기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 상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실별 위치에 따라 조망 및 방향, 일조량, 사생활 간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조망사진은 연출용으로 실제의 조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의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무상선택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수분양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 단위호실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수분양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창호 유리는 건축허가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구(급/배기용)는 주택전시관용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건축허가도서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호실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호실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타입형의 경우라도 본 건축물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호실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 등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호실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호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테라스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선홍통,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호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다용도실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천장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호실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호실별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호실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호실 커텐박스 크기와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류)의 설치 위치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도면의 각 호실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실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호실 내부에서는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호실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디자인 패널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등의 자재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내부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창고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 및 삭제 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벽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타입별 설치 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단자함과 전기 분전함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벽체에는 호실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천장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호실 내 다용도실, 욕실 (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인조대리석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분할시공됩니다.
- 본 공사 시 적용될 호실 내 입상관, 디퓨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호실 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호실 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기본 제공되는 세탁기 및 건조기 외 입주자가 타제품을 설치할 경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단위호실의 안목치수와 본공사 시 단위호실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붙박이장 설치 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조대리석 및 타일류(욕실 선반, 현관디딤판, 주방상판, 파우더 상판 등)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존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호실 및 최상층 호실과 기타층 호실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될 수 있으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줄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호실 내 욕실은 식사사용을 목적으로 배수구가 배치되었습니다. 건식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수구의 봉수 손실에 의한 배관 냄새가 역류될 수 있으니 관리 및 유의 바랍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 유리는 본 공사시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쉴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 배관 및 렌지후드용 팬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톱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호실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쿨러, 설비 배관 등의 설치로 호실 내 천장높이가 부분적으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유지보수를 위해 호실 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사이즈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99타입과 119A, 119B, 119C타입은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99, 119A, 119B, 119C 호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최상층에서 지상 4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되며, 비상 시 피난동선은 지상 4층 호실 전용공간을 통해 공용복도로 피난 동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설비 및 시스템

-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실을 하지 아니하여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 등)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시설(가스정압시설, 지상개폐기, 상하수도시설 등) 설치를 위해 대지일부가 무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야에 간섭, 조망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기반시설 공급자와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과 건축물 입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고, 옥탑에는 피뢰침,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침해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위호실 천장내부에 상부 호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이 발생하거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호실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실내 벽체 및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배관의 파손 및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등), 온도조절기 등의 설비는 노출될 수 있고, 본 공사 시 위치 및 규격,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의 맨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입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일부호실 천장내부는 기계 및 전기설비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복합용도 건축물로 오피스텔의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비상시 소방/피난 동선으로 타 시설과 공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어와 인접한 호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설비, 상하수도, 중수, 우수, 경관조명, 가로등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추후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개소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치와 충전기 수는 변경될 수 있고,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공용복도 및 단위호실 내에 소방 관련법규에 따라 배연창(지상 2층~지상 29층) 및 완강기(지상 3층~지상 10층)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개폐 배연창문은 소방설비로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배연창문을 수동으로 무리하게 작동시 배연창의 자동폐쇄장치 및 모터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수리비는 입주자(입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지상4층 및 지붕층에 통합설치 및 통합 운영되며, 실내기가 미운전시에도 타호실 에어컨 사용에 따라 통합 실외기가 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외기 기본요금도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에 가스설비는 근린생활시설용으로만 공급되고 오피스 및 오피스텔 단위호실에는 공급되지 아니하며, 추후 별도로 가스 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구내통신실(TPS)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법적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주방, 옥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입주자(입점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건축물 지붕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인접한 호실에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시설별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온수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오피스텔 냉방은 호실별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 별, 호실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입점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천장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위한 천장 점검구 및 환기구가 설치되고 기계식 환기 장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오피스텔 단위호실은 근린생활시설의 주방 배기팬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호실의 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호실 내 싱크장 하부,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민공동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에 배치된 공용부분(MDF실, 용역원실, 관리실)의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장비가 지하주차장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

- 주요 주민공동시설의 소유자(공유자)는 아래 표와 같이 분배되어 있으며, 입주 후 관리단(입주자 대표위원회)의 구성 이전까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가 제공한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되오니, 계약 전 운영방식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주요 주민공동시설 명칭	사위실, 휴게실	관리사무소, 운영사무실, 관리실	종합방재실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소사이어티클럽, 클럽아크로라운지, 스터디라운지	호실창고
해당 층	2F~3F	B1 : 관리사무소, 운영사무실 B2 : 관리실	B1	B1	B3, B7
지분 소유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B1: 오피스텔 B2 :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오피스텔

-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소사이어티클럽, 스터디라운지, 클럽 아크로 라운지 등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 시 현장여건 및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설계 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마감재 등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소사이어티클럽, 스터디라운지, 클럽아크로라운지 등)은 오피스텔 입주인들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단(입주자 대표위원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복도, 공중화장실의 경우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하 1층에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공동시설로서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 규모와 용도는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창고는 오피스텔 호실수보다 적으므로 운영방식은 입주 후 관리주체가 결정하기로 하며, 사용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정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사용승인 후 관리비 절감 및 건물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리단(입주자 대표위원회)이 결정하여 입주자 외에 외부인원에 대하여 유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단지와 비교 등을 이유로 추가설치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오피스텔의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수분양자의 판단 하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추후 입주 시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으로 전환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수분양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는 수분양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수분양자는 사업자 등록 시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 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보존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입점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과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에 입주·입점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에는 해당관청의 「옥외광고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준수하여 관계부서의 승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단위 : 원, VAT별도)	사업자 번호
건축	(주)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무소	1,050,000,000원	120-86-42875
토목			
기계			
구조			
전기	(주)한림건축씨엠종합건축사무소	1,150,000,000원	120-86-42875
통신			
소방			

###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업체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시행자 및 분양사업자	원트웍티파이브피에프브 주식회사 (110111-72803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12층 (여의도동)
시공사	디엘이앤씨(주) (110111-773680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대리사무신탁사	한국자산신탁(주) (110111-2196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원트웬티파이브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사업방식 : 분양관리신탁 및 대리사무계약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
- 영등포구청 건축과 (2021-건축과-신축허가-23 (2021. 03. 11.)) 2021년 3월 11일 건축허가 완료

## ■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위치 및 분양안내

- 주택전시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GF층
- 분양문의 : 1533-2521
- 홈페이지 : <https://www.acro.co.kr/>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크로 여의도 더원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